

한미약품 인권정책

인권경영 선언(Our Commitment)

한미약품은 본 인권정책 성명을 기초로 공급망을 포함하는 경영활동 전반에서 실제적·잠재적 인권리스크를 식별하고, 방지하고, 완화하고 대처하고자 합니다.

한미약품은 인권경영 이행을 위해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국제인권장전(International Bill of Rights),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및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핵심협약, 경제협력기구(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유엔 아동권리 협약 등 국제·국내 인권 규범을 준수합니다.

본 인권정책 성명에 따라 인권 리스크를 식별 및 모니터링하고, 비준수 시 시정하고, 비준수로 인한 피해를 적시에 구제·지원하며, 진행상황을 투명하게 보고합니다. 아울러 내부 고충처리 및 구제절차 이행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충분치 못하다고 볼 수 없거나 진정한(피해자)이 원할 경우, 사법적 또는 비사법적 구제수단을 알려주며 이에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한미약품은 본 인권정책 성명에서 제시된 국제 인권규범 및 기준이 각 사업장의 소재국의 법규와 충돌할 경우,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습니다. 아울러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야기하거나 인권 침해 사건에 연루되거나 방조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내외 인권 원칙을 지지하고 준수하겠습니다. 본 인권정책 성명의 적용대상은 한미약품의 모든 임직원으로 국내·외 생산 및 판매법인, 자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합니다. 또한, 한미약품 임직원은 공급자 및 판매·서비스 조직을 대할 때에도 본 인권정책 성명을 따르며, 더 나아가 거래관계에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본 인권정책 성명을 존중 할 수 있도록 권장합니다. 또한 당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 각종 거래 관계를 갖는 공급망의 임직원, 한미약품이 사업을 영위하는 지역사회 주민 등 사업 및 투자활동 운영 전반에 포괄적으로 적용됩니다. 법규나 조직의 정관 또는 사규 등에 특별한 조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미약품의 모든 임직원은 본 인권정책 성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합니다.

주요 인권 이슈(Salient Human Rights Issue)

차별금지

한미약품은 근로자의 불법적인 차별을 받지 않는 작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노동 관행 및 노동 환경에 있어 인종, 피부색, 나이, 성별, 출신, 장애, 임신, 종교, 정치성향, 결혼 여부 등 모든 불법적인 차별을 금지합니다.

근로자 인권

한미약품은 모든 근로자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성희롱, 학대, 체벌, 정신적 또는 신체적 강압, 폭언 등의 비인도적인 대우나 위협이 없는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아동노동 금지

한미약품은 법적 최소 근로 연령에 미달하는 아동의 고용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강제노동 금지

한미약품은 근로자에게 최대 근로시간 및 최저 임금, 복리후생 및 보상 등 관련 법적 기준을 준수합니다.

결사의 자유

한미약품은 근로자가 노동조합 또는 직원협의체 등 법률로 보장된 결사의 자유와 단체 교섭의 권리를 존중합니다. 또한 노동조합 결성, 가입 및 활동 등을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하지 않습니다.

안전 및 보건

한미약품은 비즈니스 과정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험요소 평가 및 제거, 지속적인 교육과 비상대응 훈련, 개인 보호장비 제공 등 법적 기준을 준수합니다.

소비자 및 지역사회 권리보호

한미약품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 및 지역사회의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제품의 개발, 제조, 표시 등을 함에 있어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품의 품질 및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합니다.

개인정보보호

한미약품은 경영활동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실사 원칙(Our Approach to Respecting Human Rights)

한미약품은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에 기반한 인권실사 및 인권영향평가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주요 결과를 공개·보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요 결과를 인권정책에 반영하고, 내외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해 개선방안을 협의하여,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신속히 방지하고 대처하겠습니다.